

2009. 2. 10.

**수신 : 제천시의회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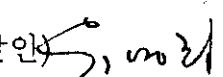
**제 목 : 제천시 한방·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 발의**

---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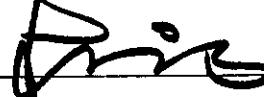
붙임 1. 의안발의 서명서 1부.

2. 제천시 한방·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유영화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의 3인

# 제천시 한방·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

## 의 안 발 의 서 명 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김永和	김영화	
김명섭		
성명중		
최경중		

## 제천시 한방·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

의안번호	1317
------	------

발의연월일 : 2009. 2. 10.  
발의자 : 유영화의원외 3인

### 1. 제안이유

- 우리 지역의 고유한 한방음식 및 향토음식을 계승발전하고 전통 향토음식으로 발굴 육성시키고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한방음식 및 향토음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한방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방음식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3조)
- 한방음식의 발굴·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한방음식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한방음식 및 한방음식업소의 육성과 보존·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 한방음식의 연구와 연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제13조)
- 한방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정착하고, 글로벌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된 한방음식을 표준화하고 관광상품화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3. 제정안 : 복사본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법률 제8852호, 2008. 2.29,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 5. 기타참고사항

- 한방음식 명품화 사업(신활력화사업) 1부.

# 제천시 한방 ·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고유한 한방음식 및 향토음식의 계승 · 발전과 발굴 ·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방음식 및 향토음식"(이하 "한방음식"이라 한다)이란 한방약초 등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전통 음식을 말한다.
2. "한방음식점"이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한방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식"이란 한방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천시한방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한방음식심의회)** ① 한방음식 발굴 ·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한방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방음식 및 한방음식업소의 지정 · 취소,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한방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한방음식 평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한방음식 관광상품화에 따른 사항
5. 기타 한방음식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 음식문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방 음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한방음식의 발굴 · 지정 등)** ① 시장은 한방음식의 보전과 새로운 음식의 발굴 · 개발을 위하여 조사 · 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 · 개발된 새로운 한방음식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8조(한방음식점의 지정)** ① 한방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방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 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④ 한방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시에서 주관하는 음식관련 축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한방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한방음식 및 한방음식업소의 육성과 보존 ·

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
2. 한방음식 및 지정업소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
3.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4. 그 밖에 한방음식과 지정업소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행 · 재정적 지원

**제11조(명칭사용의 금지)** 한방음식업소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한방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설치하거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한방음식연구)** ① 시장은 한방음식의 발굴 · 개발 · 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방음식연구회 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연구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시 관내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연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연구업무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 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한방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시장은 한방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정착하고, 글로벌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된 한방음식을 표준화하여 관광상품화 한다.

1. 발굴·개발된 한방음식의 재료, 구성비를 구명하여 요리법을 표준화 한다.
2. 한방음식을 특허 등록하여 소유권을 확보 한다.
3. 한방음식 요리책자 발간, 홍보자료 제작, 시식 등 관광 상품화에 힘쓴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천시에서 지정한 한방음식 및 한방음식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법률 제8852호, 2008. 2.29, 일부개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한방음식 명품화 사업(신활력사업)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3년)
- 사업비 : 100,000천원 / '09년 (총사업비 400,000천원)
- 사업내용 : 한방음식개발, 한방음식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운영, 한방음식상품화, 홍보책자 제작, 전시회 개최 등

### □ 2008년 추진실적

- 한방음식 개발 : 약채락 비빔밥
- 한방음식점 지정 : 5개소
- 한방 약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3개과정
- 한방 약선음식 전시회 개최 : 2회

### □ 2009년 추진계획

- 한방약선음식 사업화 지원
  - 대상 : 약채락 기술이전 추가 지정업소
  - 약채정식, 약초나물뷔페 등 추가메뉴개발 및 사업화지원
- 한방약선음식 전문반 육성 : 20회 600명
  - 음식업소 대상으로 한방약선음식의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한 전문인 양성교육
- 한방약선음식개발, 책자제작, 전시회 개최
  - 한방약선음식 책자 제작을 위한 매뉴얼 개발 : 100종
  - 한방약선음식 100선집 책자제작 및 전시회개최

### □ 향후 발전방향

- 한방음식의 타 지역과의 차별화로 인한 마케팅 이슈화
-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대비 제천음식문화 및 외식업소의 상품성 향상으로 관광객 유치 및 약초의 본 고장 홍보